

일본의 해상보안청

정보신청기관 : 해양경찰청

I. 연혁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1948년 아시다내각(芦田内閣)에 의해 설립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당시 까지 일본주변해역에서의 범질서를 유지해 왔던 일본해군이 소해부대(掃海部隊)¹⁾를 제외하고 해체되었다. 그 후 해상보안청은 일본 해상에서의 구난·치안유지 및 해상교통을 담당하는 해상경찰·구난종합기관으로서 운수성(지금의 국토교통성)의 외국(外局)에 설립되었다.

1952년에 요시다내각(吉田内閣) 하에서 보다 군사조직에 가까운 해상경비대가 해상보안청부속기관으로 조직되었지만, 바로 경비대로 분리되고 뒤에 해상자위대가 되었다. 보안청 창설의 당시 치안조직의 일원화의 시점에서 해상보안청도 해상공안국(公安局)으로 바뀌어 보안청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해상보안청의 반대로 인해 보안청법의 해상공안국에 관한 규정 및 해상공안국법은 시행되지 않은 채 그것에 대신해서 자위대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상보안청은 해상공안국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II. 해상보안청의 성격

1. 경찰조직으로서의 성격

일본의 경우 육상경찰과는 달리 해상경찰의 활동의 경우에는 해군의 군선 혹은 보조선의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래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이러한



1) 주로 2차세계대전 시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던 부대.

부분에서 해상보안청(해상경찰)의 군대와 경찰 기능에 대한 혼란에 대해 논의가 있어 왔다.

해상보안청은 범죄단속과 같은 사법경찰기능과 해상교통행정과 같은 행정경찰기능을 갖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일본의 국내법상 해상경찰 부대이고, 해상보안청법 제25조에서는 군대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법제도상 해상보안청이 일정한 행정목적확보와 법질서유지를 기본임무로 하는 경찰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해상보안청법이나 그 외 법령에서 해상보안청에 부여되는 임무는 상황에 따라서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해군의 임무로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해상보안청은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크, 제복 등은 군대의 색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침반을 디자인한 의장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영어 명칭은 1948년 개청 당시에는 Maritime Safety Agency of Japan(약칭 MSA 또는 JMSA. 즉 ‘일본국해상보안청’)이라고 했으나, 외국선원 등에서 “해상경비기관인지 해사(海事)서비스기관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2000년부터 Japan Coast Guard(JCG)로 하고 있다.

2. 일본 국내법에서의 해상보안청의 성격

해상보안청은 범죄단속과 같은 성격을 지닌 사법경찰과 해상교통행정과 같은 성격을 지닌

행정경찰, 즉 쌍방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이러한 해상보안청의 임무는 일본이 국제적 무력분쟁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행된다. 즉 외국과의 사이에 무력분쟁의 사태가 생긴다고 해도 해상에서의 범죄방지와 위험 제거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해상보안청법 등의 국내법규정에 합치한 강제적 조치와 무기사용을 포함한 임무수행은 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관계법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일본이 국제적 무력분쟁의 당사국이 된 경우에는 자위대에 대해서 방위출동의 명령이 내려지고, 그 때에는 자위대법 제80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동조에 근거해서 해상보안청은 방위청장관의 지휘 하에 놓인다. 그러나 방위청장관의 지휘 하에 해상보안청이 위치하게 되어도 일본의 국내법상에서는 해상보안청법 제2조 규정의 임무와 기능에 변경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즉 일본의 국내법상에서는 국제법상의 군대인 자위대를 지휘하는 방위청장관의 지휘 하에서도 해상보안청은 해상경찰로서의 임무만을 수행할 뿐, 군대로서의 임무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본 정부를 일방 당사자로 한 非국제적 무력분쟁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치안출동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해상보안청은 자위대법 제80조에 근거해서 방위청장관의 지휘 하에 놓일 수 있다. 이때에는 무력분쟁이라고는 해도 非국제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자위대도 반도(叛

徒)의 제압이라는 경찰의 기능만을 갖는다. 따라서 방위청장관 지휘 하에 해상보안청이 편입되어도 그것이 국제법상의 군대의 기능을 갖게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분쟁과 같이 국제적과 비국제적인 무력분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상보안청이 어떠한 자에 대해서 임무수행을 실시하고 있는가의 여부, 즉 강제적 조치와 무기사용의 객체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Ⅲ. 임무 및 담당수역

해상보안청은 해상의 안전 및 치안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이고, 국토교통성의 외국(外局)이다. 따라서 주로 해난구조, 교통안전, 방재 및 환경보전, 치안유지가 임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양권익의 보전(영해경비·해양조사)도 임무로 하고 있다. 외국의 함선에 대한 임무는 해상자위대가 담당하고, 선박에 대한 임무는 해상보안청이 담당한다.

외국에서는 연안경비대(coast guard) 또는 국경경비대 등으로 불리는 준군사조직에 상당하고,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는 군대의 일부로서 참전하는 것이 국제법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방위대신의 지휘 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위대에는 편입되지 않고, 항상 경찰임무와 해난구조를 일관해서 수행한다.

해상보안청의 임무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임무

(1) 경비업무

바다에 관련하는 범죄수사, 경비 등의 바다의 공안경찰·경비경찰로서의 업무(영해경비도 포함한다)

(2) 구난업무

해난구조, 낙도(落島)의 환자수송, 선박의 소화(消火), 오염방지 등, 바다의 소방기관으로서의 업무

(3) 해양정보업무

해도의 작성, 조류의 측정, 방재를 위한 해저화산·해저단층의 조사 등, 바다의 측량기관으로서의 업무

(4) 교통업무

등대의 설치·관리, 항해지원시스템 등, 바다의 교통경찰·해사(海事)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업무 등을 소관으로 한다.

설치근거는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 및 해상보안청법 제1조이며, 경비업무 등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 해상보안관은 해상보안청법 제31조, 형사소송법 제190조에 의해서 특별사법경

찰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설 당시의 해상보안청은 일정기간 해군함선의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도 했었다.

2. 담당수역

해상보안청의 담당수역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일·미SAR협정에 근거한 수색구조수역(본토로부터 남동 1,200해리 정도)이다. 이 중 영해와 EEZ를 합친 면적만으로도 447만km²이고, 영토(약 38만km²)의 약 11.8배에 상당한다. 이것에 SAR협정분담지역을 합치면 국토면적의 약 36배를 담당하게 된다. 수색구난임무 중, 해상보안청의 능력으로는 대처 곤란한 경우에는 각 관구해상보안본부로부터 해상자위대에 재해파견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재해파견요청을 받은 해상자위대에서는 호위선, 초계기, 구난비행대 등을 보내서 해상보안청의 활동에 협력하게 된다.

해상보안청의 활동범위는 당초, “항, 만, 해협 그 외 일본의 연안수역(제정 당시의 해상보안청법 제1조 제1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후에 개정되어 단순히 “해상에서”라고 규정되고, 활동범위의 한정이 해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범위는 전 세계에 미치며, 실제로 전용선인 ‘시마시마’에 의한 유럽-일본 간의 플루토늄 수송호위임무, 말라카(Malacca) 해협에서의 해적 수색임무 등이 있었다.



2) 해당 통계는 2008년 기준이다.

IV. 조직

해상보안청은 본청과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으로서 11개의 관구해상보안본부(管區海上保安本部)를 두고 있다. 각 관구의 담당구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당해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구역, 연안수역 및 그 근해가 담당구역이 된다.

〈 표 1 〉 관구해상보안본부담당수역의 개요



직원 수는 약 1만 2,411명(본청은 1,047명, 관구해상보안본부 등의 지방부서는 10,840명이다. 또한 순시선·항공기 등에는 해상보안관 5,974명이 있다)이고, 예산규모는 약 1,858억 엔 정도(해상자위대는 약1.1조 엔)이며,²⁾ 인원의 대부분은 해상보안관이다.

V. 해상보안청법의 기능과 구체적인 내용

1. 해상보안청의 국내법상의 기능

해상보안청법은 해상보안청의 설치 조직, 해상보안관의 권한 등을 정한 일본의 법률이다.

2. 해상보안청법의 구체적인 내용

(1) 설치목적

해상보안청법 제1조 제1항은 “해상에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반을 예방, 조사, 진압을 위해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대신이 관할하는 외국(外局)으로서 해상보안청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2) 임무 및 관장사무

해상보안청법은 제2조에서 제1조 제1항 규정의 해상보안청설치목적에 입각해서 해상에서의 임무로서 법령의 준수, 해난구조, 해양오염방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범인의 조사 및 체포, 선박교통규제, 수로·표식관련사무 그 외 해상안전 확보에 관한 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규정의 사무 중, 범인의 수사 및 체포와 같은 사법경찰목적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다. 또한 해상보안청법 제5조는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에

규정하는 사무를 해상보안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해상에서의 법령의 준수
- 2) 해난 시의 인명·적하·선박의 구조
- 3) 조난선박 구호, 표류물 및 침몰품 등의 처리
- 4) 해난의 조사
- 5) 선박교통장해제거
- 6) 해상보안청 이외의 자가 수행한 구조·방해제거의 감독
- 7) 여객 또는 화물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해상에서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감독
- 8) 선박 및 선박교통에 관한 신호
- 9) 항칙(港則)
- 10) 폭주(輻輳) 해역교통안전확보
- 11) 해상오염·재해방지
- 12) 연안수역순시경계
- 13) 해상에서의 폭동·소란진압
- 14) 해상에서의 범인수사·체포
- 15) 유치(留置)업무
- 16) 국제수사공조
- 17) 경찰청 및 도도부현(都道府県) 경찰, 세관, 검역소 그 외 관계행정청과의 사이에서의 협력, 공조 및 연락
- 18) 국제긴급원조대의 파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제긴급원조활동
- 19) 수로의 측량 및 해상의 관측
- 20) 수로지도³⁾ 및 항공지도(圖誌)의 제작 및 공급



3) 원문에서는 圖誌라고 규정되어 있다.

- 21)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의 정보
- 22) 등대, 그 외 항로표식의 건설, 보수, 운용 및 용품
- 23) 등대, 그 외 항로표식의 부속설비에 의한 기상의 관측 및 그 정보
- 24) 해상보안청 이외의 자의 등대, 그 외 항로표식의 건설, 보수 및 운용을 수행하는 자의 감독
- 25) 소관 사무에 관련한 국제협력
- 26) 법령에서 정한 문교연수시설(文教研修施設)⁴⁾에서의 소관사무에 관한 연수의 수행
- 27)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건조, 유지 및 운용
- 28) 위 각 호에 기재된 것 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무

(3) 지휘감독

해상보안청의 장은 해상보안청장관으로 한다(해상보안청법 제10조). 해상보안청장은 국토교통대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국토교통대신 이외의 대신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각 대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주무대신이 일반적 감독권한을 갖지만, 동조 규정의 다른 대신에게도 해상보안청장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보안청장관은 예를 들어 입관계법령의 준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입국관계법령에 관해서는 법무대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동법 제10조와 같은 규정, 즉 일정한 경우 소관 사무에 따라 다른 정부기관 장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일본의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4) 법령준수사무

해상보안청법 제15조는 해상보안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상보안관은 “각각의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행정관청의 당해 관리라고 간주하고, 당해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 행정관청이 제정하는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동조에서 이른바 당해 관리로서 해상보안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10조에서 해상보안청장관은 당해 임무를 소관하는 대신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상보안청장관이 해상보안관의 지휘권을 유지한다.

(5) 서류제출명령, 현장검사(立入検査) 및 질문의 권한

해상보안청법 제17조는 해상보안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선장 또는 선장에 대신해서 선박을 지휘하는 자에 대해



4) 문교연수시설(文教研修施設)이란 국가의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등의 기관의 하나로서, 주로 소관 업무에 관한 연수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 법령에 따라서 갖추어야 하는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고, 선박의 동일성, 선적(船籍)항, 선장의 성명, 직전출발항 또는 출발지, 목적항 또는 목적지, 적하의 성질 또는 적하의 유무 그 외 타 선박, 적하 및 항해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선박의 진행을 정지시켜서 현장검사를 하거나 또는 승조원 및 여객에 대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서 말하는 현장검사 및 그 외의 업무는 해상에서의 법령준수와 범죄예방이라는 주로 행정경찰상의 목적에서 수행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서류제출명령 및 질문의 경우에 상대방의 협력은 임의이지만, 현장조사에 관해서는 즉시 강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동조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법률조문 상으로는 제한은 없지만, 국제법상의 특권과 면제를 갖는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는 인정될 수 없다. 즉 외국군함, 비상업목적으로 운항되는 외국 정부공선(公船)은 현장조사대상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해상의 외국선박 일반에 대해서도 관습법 또는 조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검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통상 현장검사대상이 아닌 외국선박이라도 그 기국(旗國) 또는 선장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현장검사가 가능하다.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권의 발동 시에 목적달성을 위해서 몇 가지의 수단이

행사가능한 경우에는 목적달성의 장애의 정도와 비례하는 한도에서만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경찰법 제7조 또는 해상보안청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경우(범인의 체포 혹은 도주의 방지, 자기 혹은 타인에 대한 방호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에서)에는 적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6) 강제적 조치(해상보안청법 제18조)

해상보안관의 강제권에 관한 해상보안청법 제18조 제1항은 “해상보안관은 해상에서 범죄가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 또는 천재지변, 해난, 공작물의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 위험한 사태”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에 위험이 미치거나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외에 다음에 기재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1) 선박의 진행의 개시, 정지 또는 출발정지
- 2) 선박의 항로변경 또는 지정장소로의 이동
- 3) 승조원 등의 하선 그 외 제한 또는 금지
- 4) 적하의 육양(陸揚), 그 제한 또는 금지
- 5) 타선(船) 또는 육지와와의 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 6) 이들 조치 외에 해상에서의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위험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재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선박의 외관, 그 외 주위의 사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해상에서의 범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 해상에서의 공공의 질서가 현저하게 혼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른 수단이 없는 때에는 해상보안관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인정된다.

동조는 당초 사법경찰과의 관련에서도 적용을 상정하고 있었으나, 형사소송법개정 등을 통해 해상에서의 치안유지와 위협의 제거라는 행정적인 목적에서 해상보안관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강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적용되게 되었다.

제18조에 근거한 강제적 조치는 경찰비례의 원칙 등으로부터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이른바 영해경비를 보다 넓게 군사적인 작용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해서 경찰의 행동원칙의 하나인 비례원칙에 따르지 않고, 주권과 영역의 보전목적이 달성되는 한도까지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7) 무기사용(해상보안법 제20조)

무기사용에 관한 동법 제20조의 제1항은 “해상보안관 및 해상보안관보의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다.

동조 2항은 2001년 개정에서 추가된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의해서 무기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이하의 상황에서 무기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정선명령(停船)을 반복해도 따르지 않고, 해상보안관 등의 직무집행에 저항한다든가 또는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상보안청장관이 “선박의 외견, 항해의 태양, 승조원 등의 이상한 거동, 그 외”의 사정 등으로부터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태”라고 인정한 때에는 해상보안관 등은 “당해 선박의 진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믿는 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음의 4개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 1) 당해 선박이 외국선박(외국군함 및 비상업 목적정부공선)을 제외한다)이라고 판단되고, 국제연합해양법조약 제19조가 말하는 무해통항(無害通航)이 아닌 통항(선박이 항로를 지나가는 것)이 일본의 영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2) 당해 항해를 방치하면 이것이 장래 반복해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당해 항해가 일본의 영역 내에서 사형 또는 무기 혹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흉악한 죄(중대흉악범죄)를 범하는 것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심을 불식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당해 선박의 현장검사를 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래에 중대흉악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조 제1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사용에 관해서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동조 제2항에 의한 영해 내에서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도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른다.

「능등반도불심선사안에서의 교훈반성사항에 대해서(能登半島沖不審船事案における教訓・反省事項について)」⁵⁾에 따라서, 이른바 불심선(不審船)에는 해상보안청이 우선 대처하고 그것으로는 대처가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상경비행동에 의해서 자위대가 대처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해상보안청법의 2001년 개정과 동시에 자위대법을 일부 개정해서 영해 내의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한 이 해상보안청법 제20조 제2항을 해상경비행동실시 시(時)의 자위대도 준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8) 군대기능의 부정(해상보안청법 제25조)

해상보안청법 제25조는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해상보안청 또는 그 직원이 군대로서 조

직되고 또는 군대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라고 하고 있다. 동조는 해상보안청이 전쟁포기, 전력 불유지(不維持) 및 교전권부인을 규정한 일본헌법 제9조가 금지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규정이다.

그런데 자위대법 제80조는 제1항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제76조 제1항 또는 제78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자위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동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상보안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제 하에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상보안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제 하에 둔 경우에는 정부명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위청) 장관에게 이것을 지휘하게 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해상보안청법 제25조와 국제평화협력업무에 관한 동법 제28조의 2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도 해상보안청이 수행하는 국제평화협력업무는 동법 제25조와 저촉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가 된다.

김 경 석

(외국법제조사원)



5) 1999년3월에 능등반도(能登半島, 노토반도) 근해에서의 불심선 사건으로 인해 1999년 6월에 관계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불심선 대응기준으로 불심선 대응은 경찰기관인 해상보안청이 가장 먼저 대처한다는 내용이다.